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세정보 연계 활용 규정 구체화〉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2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1. 과세정보 연계 활용 규정 구체화	3
III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2025년 2월 21일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자 : 박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21.

(3) 회 부 일 : 2025.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과세정보 연계 활용 규정 구체화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창에게 요청할 수 있는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② (생략)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u>필요한 과세정보</u> 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 ----- ----- ----- <u>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u> -----.
1. <u>납세자 인적사항</u>	1. <u>사업자등록번호</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u>	<u><삭 제></u>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제1항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제16조제1항2).

이와 같은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및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12조제2항3) 등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1. 2. (생략)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억원 미만인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등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제16조제2항4) 등은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등의 제조업자 중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하여 재활용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폐기물부담금 징수 및 재활용의무 예외 규정]

구분	의무	예외
폐기물부담금 징수	-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이 들어있는 경우 -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대상품목) ① 살충제·유독물 용기, ② 부동액, ③ 1회용 기저귀, ④ 담배, ⑤ 플라스틱제품(36개 업종), ⑥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가 있는 제품·포장재인 경우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일정 지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등)
재활용 의무	-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경우 -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예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등)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예)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의 경우 재활용의무 면제

현행 법령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재활용의무 대상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법 제37조⁵⁾는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이 2023년 3월 신설되었음에도, 2025년 4월 현재까지 ‘필요한 과세정보’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의 범위가 추상적임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무상 한계가 있어,

개정안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구체화하여 국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⁶⁾

과세정보는 예외적인 사유에만 해당 목적의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므로,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개정안의 문구는 국세청과 부처간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기존 조항에 비해 요청 가능한 정보 범위가 일부 좁아질 수 있으나 그로 인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6) 과세정보 요청 시 필요 문구는 국세청과 사전 합의되었음.

해 실무상 문제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폐기물부담금 제도

□ 개 요

- 유해물질 함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93년~)

※ 근거법령 : 자원재활용법 제12조(폐기물부담금)

□ 적용 대상

- **(산정기준)** 환경에 유해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가 있으며, 재활용의 기술성과 경제성이 없는 품목
- **(품목)** ①살충제·유독물 용기, ②부동액, ③1회용 기저귀, ④담배, ⑤플라스틱제품(36개 업종), ⑥고흡습성수지 아이스팩

※ △ **“껌” 품목**은 사용량 감소 및 배출문화 정착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24.7월)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4.3월)」 후속조치

- **(납부자)** 해당품목 제조 및 수입업자

□ 산출 방식

- 전년 제조·수입 실적 × 품목별요율 × 부담금산정지수

□ 징수기관 및 회계

- 한국환경공단에서 징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

